중요정보 고시사항

중요정보 고시사항을 확인하세요

1. 보람상조 중요정보 고시사항

- 환급시기: 고객의 환급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
- <mark>환급기준</mark>: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
-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: 상품가입 메뉴에서 확인 가능

(2019년 12월 31일 기준 | 단위 :원)

보람상조그룹 전사업장	총 선수금	총 고객환급의무액	상조관련자산	
보람상조개발㈜	377,551,882,000 원	253,784,870,650 원	365,302,386,161 원	
보람상조라이프㈜	294,057,890,000 원	178,690,596,690 원	227,802,069,373 원	
보람상조애니콜㈜	9,539,329,500 원	2,143,416,070 원	8,328,780,315 원	
보람상조피플㈜	207,409,047,500 원	157,868,729,440 원	188,513,534,222 원	
한국힐링라이프㈜	44,490,061,665 원	29,731,682,678 원	24,424,933,663 원	
㈜재향군인회상조회	319,021,895,544 원	250,901,461,035 원	280,238,305,762 원	
합계	1,252,070,106,209 원	873,120,756,563 원	1,094,610,009,496 원	

- = 보람상조라이프㈜, 보람상조개발㈜, 보람상조피플㈜, 보람상조애니콜㈜, 한국힐링라이프㈜, ㈜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
 - ※ 2019년 12월 20일자로 한국힐링라이프㈜는 보람상조개발㈜로 인수되었습니다. 2020년 3월 4일자로 ㈜재향군인회상조회는 보람상조개발㈜로 인수되었습니다.

인수 후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보람상조관련 자산의 변경 등은 외부 회계감사 후 반영되었습니다.

- 2010년 9월부터 [할부거래에 관한 법률]제 27조에 의거하여 각 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(<u>www.kmaca.or.kr</u>)과 계약하고 고객선수금의 50%를 보전하고 있습니다.
- 보람상조라이프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(<u>www.kmaca.or.kr</u>)에 104.6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.
- 보람상조개발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(www.kmaca.or.kr)에 50.8억원을 줄자하였습니다.
- 보람상조피플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(www.kmaca.or.kr)에 10.9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.
- 보람상조애니콜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(www.kmaca.or.kr)에 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.
- 한국힐링라이프㈜는 한국상조공제조합 (www.kmaca.or.kr)에 3억원을 줄자하였습니다.
- ㈜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고객물입금의 50%를 제 1금융권 하나은행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지급 보증계약 또는 예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-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.

2. 보람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안내

- = 2010년 9월 18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보람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함(<u>www.kmaca.or.kr</u>/대표전화 1688-0972)과의 공제 계약 체결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- 보람상조는 상조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 고객 부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고객님께 약속 드립니다.